



EU Solvency II 내부모형 사용 승인 동향

김혜란 연구원

연구

■ EU Solvency II는 요구자본 산출을 위한 표준모형을 인정하고 있으나 회원국 감독당국 승인을 요건으로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사용을 인정하고 있음. 내부모형 승인은 Solvency II 규정에서 정한 활용검증, 통계적 품질 표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영국·독일·네덜란드 등의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받았으나 회원국 감독당국 간 내부모형 승인 기준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함.

■ 2016년 시작된 EU Solvency II는 지급여력 요구자본(SCR) 산출을 위한 표준모형을 정해놓고 있으나 회원국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건으로 내부모형 사용을 인정하고 있음.

● SCR 산출 표준모형은 각 리스크 모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후 리스크 간 분산효과 등을 반영하지만, 내부모형¹⁾은 개별 보험회사의 독자적 모형과 파라미터를 사용함.

■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승인을 받기 위해 Solvency II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회원국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함.²⁾

- 보험회사는 표준모형, 완전 내부모형, 부분 내부모형 중 적합한 방식을 취사선택할 수 있음.
 - 완전 내부모형 방식은 보험회사 리스크 측정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만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³⁾
 - 그에 반해 부분 내부모형 방식은 특정 리스크 산출이나 주요 사업부에만 한정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리스크 측정은 표준모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활용검증, 통계적 품질 표준, 보정기준, 손익귀속, 검증기준, 문서화 기준을

1) 내부모형은 전체 리스크 포지션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자본을 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의해 개발된 리스크 관리시스템으로 정의됨; Solvency II Glossary(CEA Insurance of Europe).
 2) Solvency II 관련 규정 및 기술서 제120조~제125조에 규정되어 있음.
 3) Munich Re(2015. 2), "Partial internal models - Techniques for integration into the standard formula".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함.

-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시스템과 의사결정과정, 경제적 자본 및 목표자본 평가 그리고 자본배분절차 등에서 내부모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확률분포 생성에 사용되는 모형은 적정·응용 가능하고, 통계적 기법에 근거해야 하며, 데이터는 정확·완전하고 적정해야 하며, 신뢰수준 99.5% VaR를 사용해야 함.
- 보험회사는 최소 1년에 한 번 각 주요 사업 분야별 손익 요인을 검토하고, 내부모형에 사용된 리스크 유형과 손익요인을 리스크 현황에 반영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주기적으로 내부모형 검증 및 내부모형에 대한 설계와 운영 내용을 문서화해야 함.

■ 2015년 4월 이후 영국·독일·네덜란드 등의 100개 이상 보험회사가 2016년 1월부터 내부모형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음.⁴⁾

- 영국은 2015년 12월 5일 PRA(건전성 감독기구)가 19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내부모형(부분 내부모형 포함) 사용을 승인함.
- 독일은 Allianz, Talanx, Munich Re, Hannover Re 등이 BaFin(연방 금융감독청)의 사용승인을 받았음.
- 네덜란드는 2015년 12월 21일 N.N.(Nationale-Nederlanden)이 DNB(네덜란드 중앙은행)로부터 부분 내부모형 승인을 받음.

■ 내부모형을 사용한 보험회사는 표준모형보다 SCR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지만, 내부모형 승인이준이 회원국 감독당국 간에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

-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방식으로 계산한 SCR 평균값은 보험회사(236개 회사)의 경우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인 반면 보험그룹(29개 그룹)은 내부모형이 20% 낮은 값으로 나타남.⁵⁾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회원국 감독당국 간 불일치를 최대한 방지하고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된 기준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통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 **kiri**

4) 中村 亮一(2016, 1, 25), “EU ソルベンシーⅡの動向, ニッセイ基礎研究所”.

5) EIOPA(유럽보험연금감독청), “제5회 정량적 영향조사(QIS5)”.